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데이터 분석 및 활용 기능 강화와 신설기구 등의 성과평가 결과 반영을 위한 46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21년 12월 14일

국무총리 김부겸

국무위원  
행정안전부관 전해철

●대통령령 제32204호

데이터 분석 및 활용 기능 강화와 신설기구 등의 성과평가 결과 반영을 위한 46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1조(「기획재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의 개정) 기획재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의2제3항에 제17호의2 및 제17호의3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7의2. 부 내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사항

17의3. 부 내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에 관한 사항

별표 1 중 총계 “1,070”을 “1,072”로 하고, 일반직 계 “1,060”을 “1,062”로 하며, 3급 또는 4급 이하 “1,019”를 “1,021”로 한다.

제2조(「교육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의 개정) 교육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제3항에 제14호의2 및 제14호의3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4의2. 부 내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사항

14의3. 부 내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에 관한 사항

별표 1 중 총계 “645”를 “647”로 하고, 일반직 계 “544”를 “546”으로 하며, 3급 또는 4급 이하 “526”을 “528”로 한다.

별표 3 1)부터 3)까지의 평가기간란 중 “2021년 12월 31일”을 각각 “2023년 12월 31일”로 한다.

제3조(「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의 개정)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3항에 제46호 및 제47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6. 부 내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사항

47. 부 내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에 관한 사항

별표 2 중 총계 “804”를 “806”으로 하고, 일반직 계 “795”를 “797”로 하며, 3급 또는 4급 이하 “766”을 “768”로 한다.

제4조(「통일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의 개정) 통일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의2제3항에 제14호 및 제14호의2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4. 부 내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사항

14의2. 부 내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에 관한 사항

별표 1 중 총계 “268”을 “270”으로 하고, 일반직 계 “264”를 “266”으로 하며, 3급 또는 4급 이하 “249”를 “251”로 한다.

제5조(「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의 개정)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3항에 제12호의2 및 제12호의3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2의2. 부 내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사항

12의3. 부 내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에 관한 사항

별표 6 중 총계 “761”을 “763”으로 하고, 일반직 계 “730”을 “732”로 하며, 3급 또는 4급 이하(검사 포함) “720”을 “722”로 한다.

별표 8 제1호1)의 평가기간란 중 “2021년 12월 31일”을 “2023년 12월 31일”로 하고, 같은 표 제2호1)의 평가기간란 중 “2021년 12월 31일”을 “2022년 12월 31일”로 하며, 같은 호 2)의 평가기간란 중 “2021년 12월 31일”을 “2023년 12월 31일”로 하고, 같은 호 3)을 삭제하며, 같은 호 4)부터 16)까지를 각각 3)부터 15)까지로 하고, 같은 호 3)[중전의 4)]의 평가기간란 중 “2021년 12월 31일”을 “2022년 12월 31일”로 하며, 같은 호 4)[중전의 5)]부터 6)[중전의 7)]까지의 평가기간란 중 “2021년 12월 31일”을 각각 “2023년 12월 31일”로 한다.

제6조(「국방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의 개정) 국방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의2제3항에 제40호 및 제41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0. 부 내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사항

41. 부 내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에 관한 사항

별표 1 중 총계 “675”를 “677”로 하고, 일반직 계 “667”을 “669”로 하며, 3급 또는 4급 이하 “642”를 “644”로 한다.

별표 2의2 1)의 평가기간란 중 “2021년 12월 31일”을 “2022년 12월 31일”로 한다.

제7조(「문화체육관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의 개정) 문화체육관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의2제3항에 제5호의3 및 제5호의4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의3. 부 내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사항

5의4. 부 내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에 관한 사항

별표 1 중 총계 “674”를 “676”으로 하고, 일반직 계 “667”을 “669”로 하며, 3급 또는 4급 이하 “596”을 “598”로 한다.

별표 4 3)의 평가기간란 중 “2021년 12월 31일”을 “2023년 12월 31일”로 한다.

제8조(「농림축산식품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의 개정) 농림축산식품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를 다음

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3항에 제13호의2 및 제13호의3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3의2. 부 내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사항

13의3. 부 내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에 관한 사항

별표 2 중 총계 “617”을 “619”로 하고, 일반직 계 “613”을 “615”로 하며, 3급 또는 4급 이하 “594”를 “596”으로 한다.

별표 4 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 2. 농림축산식품부 소속기관

조직	정원	평가기간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1개 과	4명	2023년 3월 31일까지

제9조(「산업통상자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의 개정) 산업통상자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3항에 제17호의2 및 제17호의3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7의2. 부 내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사항

17의3. 부 내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에 관한 사항

별표 3 중 총계 “929”를 “931”로 하고, 일반직 계 “918”을 “920”으로 하며, 3급 또는 4급 이하 “867”을 “869”로 한다.

제10조(「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의 개정) 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의2제3항에 제4호의2 및 제4호의3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의2. 부 내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사항

4의3. 부 내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에 관한 사항

별표 4 중 총계 “855”를 “858”로 하고, 일반직 계 “846”을 “849”로 하며, 3급 또는 4급 이하 “815”를 “818”로 한다.

별표 5의2 제1호3)의 평가기간란 중 “2021년 12월 31일”을 “2023년 12월 31일”로 하고, 같은 표 제2호 1)부터 3)까지의 평가기간란 중 “2021년 12월 31일”을 각각 “2023년 12월 31일”로 한다.

제11조(「환경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의 개정) 환경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의2제3항에 제15호의2 및 제15호의3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5의2. 부 내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사항

15의3. 부 내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에 관한 사항

별표 3 중 총계 “612”를 “615”로 하고, 일반직 계 “606”을 “609”로 하며, 3급 또는 4급 이하 “572”를 “575”로 한다.

별표 5 제2호의 평가기간란 중 “2021년 12월 31일”을 “2022년 12월 31일”로 한다.

제12조(「고용노동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의 개정) 고용노동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의2제3항에 제21호의2 및 제21호의3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1의2. 부 내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사항

21의3. 부 내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에 관한 사항

별표 2 중 총계 “608”을 “610”으로 하고, 일반직 계 “602”를 “604”로 하며, 3급 또는 4급 이하 “579”를 “581”로 한다.

별표 4 제1호가목1)부터 3)까지의 평가기간란 중 “2021년 12월 31일”을 각각 “2023년 12월 31일”로 하고, 같은 표 제2호나목1) 및 2)의 평가기간란 중 “2021년 12월 31일”을 각각 “2022년 12월 31일”로 하며, 같은 목 3) 및 4)의 평가기간란 중 “2021년 12월 31일”을 각각 “2023년 12월 31일”로 하고, 같은 목 5)의 평가기간란 중 “2021년 12월 31일”을 “2022년 12월 31일”로 하며, 같은 목 6) 및 7)의 평가기간란 중 “2021년 12월 31일”을 각각 “2023년 12월 31일”로 한다.

제13조(「여성가족부 직제」의 개정) 여성가족부 직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의2제3항에 제15호의3 및 제15호의4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5의3. 부 내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사항

15의4. 부 내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에 관한 사항

별표 1 중 총계 “275”를 “277”로 하고, 일반직 계 “271”을 “273”으로 하며, 3급 또는 4급 이하 “262”를 “264”로 한다.

제14조(「국토교통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의 개정) 국토교통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3항에 제38호의2 및 제38호의3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8의2. 부 내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사항

38의3. 부 내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에 관한 사항

별표 2 중 총계 “1,005”를 “1,008”로 하고, 일반직 계 “995”를 “998”로 하며, 3급 또는 4급 이하 “966”을 “969”로 한다.

별표 4 제1호나목의 평가기간란 중 “2021년 12월 31일”을 “2023년 12월 31일”로 하고, 같은 표 제2호1)부터 4)까지의 평가기간란 중 “2021년 12월 31일”을 각각 “2023년 12월 31일”로 한다.

제15조(「해양수산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의 개정) 해양수산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3항에 제25호의2 및 제25호의3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5의2. 부 내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사항

25의3. 부 내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에 관한 사항

제53조의3의 제목 중 “조직 및 정원”을 “조직”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및 제2항 중 “조직 및 정원”을 각각 “조직”으로 한다.

별표 2 중 총계 “594”를 “597”로 하고, 일반직 계 “590”을 “593”으로 하며, 3급 또는 4급 이하 “573”을 “576”으로 한다.

별표 4를 별지와 같이 한다.

제16조(「중소벤처기업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의 개정) 중소기업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3항에 제14호의2 및 제14호의3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4의2. 부 내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사항

14의3. 부 내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에 관한 사항

별표 2 중 총계 “481”을 “483”으로 하고, 일반직 계 “475”를 “477”로 하며, 3급 또는 4급 이하 “457”을 “459”로 한다.

제17조(「국가보훈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의 개정) 국가보훈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2항에 제13호의2 및 제13호의3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3의2. 처 내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사항

13의3. 처 내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에 관한 사항

별표 2 중 총계 “311”을 “313”으로 하고, 일반직 계 “308”을 “310”으로 하며, 3급 또는 4급 이하 “298”을 “300”으로 한다.

제18조(「인사혁신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의 개정) 인사혁신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2항에 제22호의2 및 제22호의3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2의2. 처 내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사항

22의3. 처 내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에 관한 사항

별표 1 중 총계 “386”을 “388”로 하고, 일반직 계 “385”를 “387”로 하며, 3급 또는 4급 이하 “361”을 “363”으로 한다.

별표 3 1) 및 2)의 평가기간란 중 “2021년 12월 31일”을 각각 “2022년 12월 31일”로 한다.

제19조(「법제처 직제」의 개정) 법제처 직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2항에 제21호의2 및 제21호의3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1의2. 처 내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사항

21의3. 처 내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에 관한 사항

별표 1 중 총계 “234”를 “236”으로 하고, 일반직 계 “233”을 “235”로 하며, 3급 또는 4급 이하 “219”를 “221”로 한다.

별표 2 제1호의 평가기간란 중 “2021년 12월 30일”을 “2023년 12월 30일”로 한다.

제20조(「식품의약품안전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의 개정) 식품의약품안전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2항에 제31호 및 제32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1. 처 내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사항

32. 처 내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에 관한 사항

별표 2 중 총계 “641”을 “643”으로 하고, 일반직 계 “640”을 “642”로 하며, 3급 또는 4급 이하 “621”을 “623”으로 한다.

별표 4 제2호1)의 평가기간란 중 “2021년 12월 31일”을 “2022년 12월 31일”로 한다.

제21조(「국세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의 개정) 국세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4 제1호가목2)의 평가기간란 중 “2021년 12월 31일”을 “2023년 12월 31일”로 하고, 같은 호 나목

1) 및 2)의 평가기간란 중 “2021년 12월 31일”을 각각 “2023년 12월 31일”로 하며, 같은 표 제2호1)부터 4)까지의 평가기간란 중 “2021년 12월 31일”을 각각 “2023년 12월 31일”로 한다.

제22조(「관세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의 개정) 관세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2항에 제7호 및 제8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7. 처 내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사항

8. 처 내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에 관한 사항

별표 2 중 총계 “366”을 “368”로 하고, 일반직 계 “365”를 “367”로 하며, 3급 또는 4급 이하 “355”를 “357”로 한다.

별표 4 제2호나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나. 평가대상 정원

업무	정원	평가기간
1) 수입물품 현장검사(세관관서)	52명	2022년 12월 31일까지
2) 수입물품 현장검사(세관관서)	7명	2022년 12월 31일까지
3) 수입물품 현장검사(세관관서)	10명	2022년 12월 31일까지
4) 특송물품 현장검사(세관관서)	30명	2022년 12월 31일까지
5) 특송물품 현장검사(세관관서)	18명	2023년 12월 31일까지

제23조(「조달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의 개정) 조달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2항에 제5호 및 제6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처 내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사항

6. 처 내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에 관한 사항

별표 2 중 총계 “524”를 “526”으로 하고, 일반직 계 “523”을 “525”로 하며, 3급 또는 4급 이하 “514”를 “516”으로 한다.

제24조(「검찰청 사무기구에 관한 규정」의 개정) 검찰청 사무기구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4항제7호를 제9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7호 및 제8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7. 청 내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사항

8. 청 내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에 관한 사항

별표 1 중 총계 및 일반직 계 “511”을 각각 “513”으로 하고, 전산사무관 또는 방송통신사무관 “3”을 “4”로, 전산주사 또는 방송통신주사 “18”을 “19”로 한다.

별표 5의 평가기간란 중 “2021년 12월 31일”을 “2023년 12월 31일”로 한다.

제25조(「병무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의 개정) 병무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3항에 제19호의2 및 제19호의3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9의2. 청 내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사항

19의3. 청 내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에 관한 사항

별표 3 중 총계 “279”를 “281”로 하고, 일반직 계 “275”를 “277”로 하며, 3급 또는 4급 이하 “268”을 “270”으로 한다.

제26조(「방위사업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의 개정) 방위사업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2항에 제19호 및 제20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9. 청 내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사항

20. 청 내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에 관한 사항

별표 1 중 총계 “394”를 “396”으로 하고, 일반직 계 “393”을 “395”로 하며, 3급 또는 4급 이하 “384”를 “386”으로 한다.

제27조(「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의 개정) 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2항에 제8호 및 제9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8. 청 내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사항

9. 청 내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에 관한 사항

별표 4 중 총계 “1,917”을 “1,919”로 하고, 일반직 계 “708”을 “710”으로 하며, 4급 또는 총경 이하 “702”를 “704”로 한다.

별표 6 제1호1)부터 3)까지의 평가기간란 중 “2021년 12월 31일”을 각각 “2023년 12월 31일”로 하고, 같은 표 제2호나목1) 및 2)의 평가기간란 중 “2021년 12월 31일”을 각각 “2022년 12월 31일”로 하며, 같은 목 3) 및 4)의 평가기간란 중 “2021년 12월 31일”을 각각 “2023년 12월 31일”로 하고, 같은 목 5)부터 7)까지의 평가기간란 중 “2021년 12월 31일”을 각각 “2022년 12월 31일”로 하며, 같은 목 8)의 평가기간란 중 “2021년 12월 31일”을 “2023년 12월 31일”로 한다.

제28조(「소방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의 개정) 소방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의2제2항제14호부터 제16호까지를 각각 제16호부터 제18호까지로 하고, 같은 항에 제14호 및 제15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4. 청 내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사항

15. 청 내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에 관한 사항

별표 2 중 총계 “265”를 “267”로 하고, 일반직 계 “34”를 “36”으로 하며, 3급 또는 4급 이하 “28”을 “30”으로 한다.

별표 4 1)을 삭제하고, 같은 표 2)부터 6)까지를 각각 1)부터 5)까지로 한다.

제29조(「문화재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의 개정) 문화재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의4제2항에 제18호 및 제19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8. 청 내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사항

19. 청 내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에 관한 사항

제12장(제37조)을 삭제한다.

별표 1 중 총계 “282”를 “284”로 하고, 일반직 계 “281”을 “283”으로 하며, 3급 또는 4급 이하 “270”을 “272”로 한다.

별표 3을 삭제한다.

제30조(「농촌진흥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의 개정) 농촌진흥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2항에 제18호 및 제19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8. 청 내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사항

19. 청 내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에 관한 사항

별표 1 중 총계 “344”를 “346”으로 하고, 일반직 계 “343”을 “345”로 하며, 3급 또는 4급 이하 “332”를 “334”로 한다.

제31조(「산림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의 개정) 산림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2항에 제18호 및 제19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8. 청 내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사항

19. 청 내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에 관한 사항

별표 2 중 총계 “309”를 “311”로 하고, 일반직 계 “304”를 “306”으로 하며, 3급 또는 4급 이하 “295”를 “297”로 한다.

별표 3의2 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산림청 소속기관

평가대상 정원

조직	정원	평가기간
산불 진화(산림항공본부)	15명	2022년 12월 31일까지

	16명	2022년 12월 31일까지
--	-----	-----------------

제32조(「특허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의 개정) 특허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3항제21호를 제23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21호 및 제22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1. 청 내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사항
22. 청 내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에 관한 사항

별표 1 중 총계 “1,601”을 “1,603”으로 하고, 일반직 계 “1,599”를 “1,601”로 하며, 3급 또는 4급 이하 “1,584”를 “1,586”으로 한다.

별표 3 제2호1)부터 3)까지를 각각 삭제하고, 같은 호 4)부터 9)까지를 각각 1)부터 6)까지로 하며, 같은 호 1)[중전의 4)]의 평가기간란 중 “2021년 12월 31일”을 “2023년 12월 31일”로 한다.

제33조(「질병관리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의 개정) 질병관리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2항에 제16호 및 제17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6. 청 내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사항
17. 청 내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에 관한 사항

별표 4 중 총계 “433”을 “435”로 하고, 일반직 계 “432”를 “434”로 하며, 3급 또는 4급 이하 “422”를 “424”로 한다.

별표 6 제2호나목1)의 평가기간란 중 “2021년 12월 31일”을 “2022년 12월 31일”로 한다.

제34조(「기상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의 개정) 기상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장(제28조)을 삭제한다.

별표 4를 삭제한다.

제35조(「해양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의 개정) 해양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3항에 제14호 및 제15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4. 청 내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사항
15. 청 내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에 관한 사항

별표 4 중 총계 “503”을 “505”로 하고, 일반직 계 “93”을 “95”로 하며, 3급 또는 4급 이하 “92”를 “94”로 한다.

별표 6 제2호나목1) 및 2)의 평가기간란 중 “2021년 12월 31일”을 각각 “2022년 12월 31일”로 하고, 같은 목 3)의 평가기간란 중 “2021년 12월 31일”을 “2023년 12월 31일”로 한다.

제36조(「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직제」의 개정)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직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3항제18호를 제20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18호 및 제19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8. 청 내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사항

19. 청 내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에 관한 사항

별표 2 중 총계 “135”를 “137”로 하고, 일반직 계 “134”를 “136”으로 하며, 3급 또는 4급 이하 “130”을 “132”로 한다.

제37조(「새만금개발청 직제」의 개정) 새만금개발청 직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2항에 제15호 및 제16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5. 청 내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사항

16. 청 내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에 관한 사항

별표 1 중 총계 “136”을 “138”로 하고, 일반직 계 “135”를 “137”로 하며, 3급 또는 4급 이하 “131”을 “133”으로 한다.

제38조(「방송통신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의 개정) 방송통신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3항에 제48호 및 제49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8. 위원회 내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사항

49. 위원회 내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에 관한 사항

별표 1의2 중 총계 “229”를 “231”로 하고, 일반직 계 “222”를 “224”로 하며, 행정사무관·공업사무관·전산사무관 또는 방송통신사무관 “69”를 “70”으로, 행정주사·공업주사·전산주사·방재안전주사 또는 방송통신주사 “70”을 “71”로 한다.

별표 1의3 중 총계 “229”를 “231”로 하고, 일반직 계 “221”을 “223”으로 하며, 행정사무관·공업사무관·전산사무관 또는 방송통신사무관 “73”을 “74”로, 행정주사·공업주사·전산주사·방재안전주사 또는 방송통신주사 “66”을 “67”로 한다.

제39조(「공정거래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의 개정) 공정거래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2항에 제11호의2 및 제11호의3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1의2. 위원회 내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사항

11의3. 위원회 내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에 관한 사항

별표 2 중 총계 “489”를 “491”로 하고, 일반직 계 “486”을 “488”로 하며, 3급 또는 4급 이하 “466”을 “468”로 한다.

제40조(「국민권익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의 개정) 국민권익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의2제2항에 제13호의2 및 제13호의3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3의2. 위원회 내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사항

13의3. 위원회 내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에 관한 사항

별표 1 중 총계 “476”을 “478”로 하고, 일반직 계 “468”을 “470”으로 하며, 3급 또는 4급 이하 “446”을 “448”로 한다.

제41조(「금융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의 개정) 금융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 중 총계 “225”를 “227”로 하고, 일반직 계 “223”을 “225”로 하며, 3급 또는 4급 이하 “199”를 “201”로 한다.

제42조(「개인정보 보호위원회 직제」의 개정) 개인정보 보호위원회 직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2항에 제22호의2 및 제22호의3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2의2. 위원회 내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사항

22의3. 위원회 내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에 관한 사항

별표 1 중 총계 “154”를 “156”으로 하고, 일반직 계 “151”을 “153”으로 하며, 3급 또는 4급 이하 “145”를 “147”로 한다.

제43조(「원자력안전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의 개정) 원자력안전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의2제2항에 제12호의2 및 제12호의3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2의2. 위원회 내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사항

12의3. 위원회 내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에 관한 사항

별표 2 중 총계 “123”을 “125”로 하고, 일반직 계 “122”를 “124”로 하며, 3급 또는 4급 이하 “116”을 “118”로 한다.

제44조(「국가인권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의 개정) 국가인권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5 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 1. 국가인권위원회

조직	정원	평가기간
정책교육국 교육협력심의관	1명 (고위공무원단)	2023년 9월 30일까지

제45조(「국무조정실과 그 소속기관 직제」의 개정) 국무조정실과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2항에 제7호의2 및 제7호의3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7의2. 실 내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사항

7의3. 실 내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에 관한 사항

별표 1 중 총계 “283”을 “285”로 하고, 일반직 계 “280”을 “282”로 하며, 행정사무관·사회복지사무관·공업사무관·농업사무관·보건사무관·식품위생사무관·환경사무관·시설사무관·전산사무관·방송통신사무관 또는 기록연구관 “26”을 “27”로, 행정주사·시설주사·전산주사·방송통신주사 또는 기록연구사 “4”를 “5”로 한다.

별표 1의2 중 총계 “283”을 “285”로 하고, 일반직 계 “280”을 “282”로 하며, 행정사무관·사회복지사무관·공업사무관·농업사무관·보건사무관·식품위생사무관·환경사무관·시설사무관·전산사무관·방

송통신사무관 또는 기록연구관 “26”을 “27”로, 행정주사·시설주사·전산주사·방송통신주사 또는 기록연구사 “4”를 “5”로 한다.

제46조(「우정사업본부 직제」의 개정) 우정사업본부 직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장(제31조)을 삭제한다.

별표 3을 삭제한다.

## 부 칙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8조의 개정규정은 2021년 12월 31일부터 시행하고, 제19조의 개정규정은 2021년 12월 30일부터 시행하며, 제25조의 개정규정은 202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별지]

[별표 4]

해양수산부 소속기관에 두는 평가대상 조직(제53조의2제1항 관련)

조직	정원	평가기간
국립해양조사원 1개 센터	15명	2023년 12월 31일까지

### ◇개정이유

정부의 데이터 분석 및 활용 기능을 강화하기 위하여 각 부처에 데이터 관련 업무를 수행할 전담인력을 증원하고, 평가대상으로 설치하거나 증원한 조직 및 정원을 그동안의 평가결과 등에 따라 평가대상에서 제외하거나 평가기간을 연장하는 내용으로 46개 법령을 일괄 개정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데이터 관련 업무 전담인력 증원(안 제1조부터 제20조까지, 제22조부터 제33조까지, 제35조부터 제43조까지 및 제45조)

- 1) 보건복지부, 환경부, 국토교통부 및 해양수산부에 데이터 관련 업무수행에 필요한 인력 3명(4급 또는 5급 1명, 5급 2명)을 각각 증원함.
- 2) 기획재정부, 교육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통일부, 법무부, 국방부, 문화체육관광부, 농림축산식품부, 산업통상자원부, 고용노동부, 여성가족부, 중소벤처기업부, 국가보훈처, 인사혁신처, 법제처, 식품의약품안전처, 관세청, 조달청, 병무청, 방위사업청, 경찰청, 소방청, 문화재청, 농촌진흥청, 산림청, 특허청, 질병관리청, 해양경찰청, 공정거래위원회, 국민권익위원회 및 금융위원회에 데이터 관련 업무수행에 필요한 인력 2명(5급 2명)을 각각 증원함.
- 3) 대검찰청,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새만금개발청, 방송통신위원회, 개인정보 보호위원회, 원자력안전위원회 및 국무조정실에 데이터 관련 업무수행에 필요한 인력 2명(5급 1명, 6급 1명)을 각각 증원함.

나. 신설기구 및 신규인력 성과평가 결과 등 반영(안 제2조, 제5조부터 제8조까지, 제10조부터 제12조까지, 제14조, 제15조, 제18조부터 제22조까지, 제24조, 제27조부터 제29조까지, 제31조부터 제35조까지, 제44조 및 제46조)

- 1) 평가대상 조직으로 설치한 농림축산식품부의 4개 과, 소방청·문화재청·기상청 및 국가인권위원회의 1개 과를 각각 평가대상에서 제외함.
- 2) 평가대상 조직으로 설치한 국방부의 1개 과, 인사혁신처의 2개 과의 평가기간을 각각 1년 연장하고, 교육부의 차관보 및 2개 담당관, 법무부·문화체육관광부·보건복지부 및 검찰청의 1개 담당관, 고용노동부 및 경찰청의 1개 정책관 등, 1개 과 및 1개 담당관, 해양수산부 및 국세청의 1개 센터, 법제처의 1개 법제심의관의 평가기간을 각각 2년 연장함.
- 3) 평가대상 정원으로 증원한 정원 3,319명(법무부 47명, 해양수산부 86명, 관세청 122명, 특허청 64명 및 우정사업본부 3,000명)을 각각 평가대상에서 제외함.
- 4) 평가대상 정원으로 증원한 정원 중 정원 862명(법무부 125명, 환경부 47명, 고용노동부 149명, 식품의약품안전처 15명, 관세청 59명, 경찰청 229명, 산림청 15명, 질병관리청 19명, 해양경찰청 204명)의 평가기간을 각각 1년 연장하고, 정원 2,339명(법무부 147명, 보건복지부 16명, 고용노동부 978명, 국토교통부 106명, 국세청 650명, 경찰청 377명, 특허청 5명, 해양경찰청 60명)의 평가기간을 각각 2년 연장함.

<법제처 제공>